



제429회국회(정기회)
제10차 정무위원회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프로파일링 개념 도입 및 정보주체 고지 의무 확대 등〉

■ 김현정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2113호)

2025. 11.

정 무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정 명 호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프로파일링 개념의 도입	3
2. 정보주체에 대한 고지 의무 확대	8
3. 정보주체 열람권 보장 범위 확대	14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김현정의원 등 13인
2. 제 안 일: 2025. 8. 12.
3. 회 부 일: 2025. 8. 1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안이유

최근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해 개인정보 처리 과정에서 프로파일링의 활용이 증가하고 있으며, 그 영향력 또한 확대되고 있으나 현행 법령에서는 이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의가 미비한 실정임.

한편, 현행법상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3자 제공, 목적 외 이용·제공과 관련하여 정보주체에 대한 고지의무가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로 한정되어 있으나 동의 외의 법적 근거에 따라 처리하는 경우에도 정보주체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고지의무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또한, 정보주체의 열람권 보장 범위 확대를 통하여 개인정보 자체에

대한 열람뿐만이 아닌 개인정보가 어떠한 방식으로 처리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까지 열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보주체의 자기정보 통제권을 실질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프로파일링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리도록 하며, 열람권 보장 범위를 확대하여 개인정보 처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프로파일링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함(안 제2조제2호의2 신설).

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3자 제공, 목적 외 이용·제공과 관련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에게 처리사항을 알리도록 하여 정보주체의 알 권리를 보장함(안 제15조, 제17조, 제18조).

다. 정보주체의 열람권 보장 범위를 확대하여 정보주체의 자기정보 통제권을 강화함(안 제35조).

Ⅲ. 검토의견

1. 프로파일링 개념의 도입

- 개정안은 프로파일링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프로파일링 여부를 개인 정보 처리방침에 포함하도록 하며, 프로파일링을 ‘자동화된 결정’¹⁾의 범위에 포함하여 프로파일링에 대해서도 정보주체의 거부권 및 설명 요구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의2 신설, 제4조제6호, 제30조 및 제37조의2제1항 개정).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2. (생략) <u><신설></u> 3. ~ 8. (생략)	제2조(정의) ----- -----. 1. 2. (현행과 같음) 2의2. “프로파일링”이란 개인의 업무 성과, 경제 상황, 건강, 취향, 관심사, 행동, 위치 또는 이동 등을 분석·평가하거나 예측하기 위하여 이루어지는 개인정보의 자동화된 처리를 말한다. 3. ~ 8. (현행과 같음)
제4조(정보주체의 권리)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 5. (생략) 6. 완전히 자동화된 개인정보 처리에 따른 결정을 거부하거나 그에 대한 설명 등을 요구할 권리	제4조(정보주체의 권리) ----- -----. 1. ~ 5. (현행과 같음) 6. -----처리 (프로파일링을 포함한다)----- -----

현행	개정안
제30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개인정보의 처리 방침(이하 “개인정보 처리방침”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제32조에 따라 등록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하여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한다. 1. (생략) <u><신설></u> <u><신설></u> 2. ~ 8. (생략) ② ~ ④ (생략) 제37조의2(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등) ① 정보주체는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u>인공지능</u> 기술을 적용한 시스템을 포함한다)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 이루어지는 결정(「행정기본법」 제20조에 따른 행정청의 자동적 처분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자동화된 결정”이라 한다)이 자신의 권리 또는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해당 결정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다만, 자동화된 결정이 제15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⑤ (생략)	제30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 ① ----- ----- ----- -----. ----- -----. 1. (현행과 같음) <u>1의2. 개인정보 처리의 법적 근거</u> <u>1의3. 프로파일링 여부</u> 2. ~ 8.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37조의2(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등) ① ----- -----<u>프로파일링 및 인공지능</u>----- ----- ----- ----- ----- ----- ----- ----- -----. ----- ----- -----. ② ~ ⑤ (현행과 같음)

- 최근 빅데이터, 인공지능기술의 발전으로 개인정보 처리 과정에서 프로파일링 활용이 증가하고 그 영향력 또한 확대되고 있어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응이 필요하나, 현행법에는 ‘프로파일링’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의도 미비한 상황임.
- 이에 개정안은 ‘프로파일링’을 ‘개인의 업무 성과, 경제 상황, 건강, 취향, 관심사, 행동, 위치 또는 이동 등을 분석·평가하거나 예측하기 위하여 이루어지는 개인정보의 자동화된 처리’로 정의하고, 정보주체가 ‘프로파일링’에 따른 결정을 거부하거나 그에 대한 설명 등을 요구할 권리를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프로파일링’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려는 취지임.
- 이에 대하여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정안에 따른 ‘프로파일링’의 개념이 현행법상 개인정보의 ‘처리’ 및 ‘자동화된 결정’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점에서, ‘프로파일링’의 개념을 별도로 도입할 필요

1)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의2(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등) ① 정보주체는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시스템을 포함한다)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 이루어지는 결정(「행정기본법」 제20조에 따른 행정청의 자동적 처분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자동화된 결정”이라 한다)이 자신의 권리 또는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해당 결정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다만, 자동화된 결정이 제15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자동화된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결정에 대하여 설명 등을 요구할 수 있다.
-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정보주체가 자동화된 결정을 거부하거나 이에 대한 설명 등을 요구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자동화된 결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인적 개입에 의한 재처리·설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자동화된 결정의 기준과 절차, 개인정보가 처리되는 방식 등을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동화된 결정의 거부·설명 등을 요구하는 절차 및 방법, 거부·설명 등의 요구에 따른 필요한 조치, 자동화된 결정의 기준·절차 및 개인정보가 처리되는 방식의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성이 크지 않은 측면이 있음을 고려하여야 할 것임.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의 자동화된 처리를 통해 개인의 업무 성과, 경제 상황, 건강, 취향, 관심사, 위치 등을 분석·평가·예측하는 ‘프로파일링’은 현행법 제2조제2호의 개인정보 ‘처리’²⁾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정보주체는 현행법에 따라서도 프로파일링에 대해 열람요구권(법 제35조), 정정·삭제요구권(법 제36조), 처리정지요구권(법 제37조) 및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권리(법 제37조의2)를 행사할 수 있다고 보고 있음.

○ 따라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프로파일링 개념을 도입하더라도 개인정보의 자동화된 처리에 프로파일링이 포함된다는 해석을 명확히 하는 의미 외에는 정보주체의 권리 및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규율이 강화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개념 도입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의견임.

□ 그러나 개정안은 프로파일링에 대해서도 자동화된 결정에 대해 정보주체가 가지는 권리가 적용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해석에 의하지 않고도 정보주체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는 것으로 보임.

2)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정의) 2. “처리”란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 참고로, 유럽연합의 GDPR³⁾(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일반정보보호 규정)에서는 프로파일링의 개념을 정의하고, 자동화된 결정에 대해 정보주체가 가지는 권리를 규정하면서 그 범위에 프로파일링도 포함됨을 명시하고 있음.

< GDPR의 프로파일링, 자동화된 결정 관련 규정 >

프로파일링 정의 (GDPR 제4조)

프로파일링은 특히 자연인의 업무 성과, 경제적 상황, 건강, 개인적 선호, 관심사, 신뢰도, 행태, 위치 또는 이동에 관한 측면을 분석하거나 예측하기 위해 행해지는 경우로서, 자연인에 관련한 개인적인 특정 측면을 평가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사용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자동화된 개인정보의 처리를 의미한다.

‘profiling’ means any form of automated processing of personal data consisting of the use of personal data to evaluate certain personal aspects relating to a natural person, in particular to analyse or predict aspects concerning that natural person’s performance at work, economic situation, health, personal preferences, interests, reliability, behaviour, location or movements;

자동화된 의사결정 정의 및 범위 (GDPR 제22조)

정보주체는 프로파일링 등, 본인에 관한 법적 효력을 초래하거나 이와 유사하게 본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동화된 처리에만 의존하는 결정의 적용을 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The data subject shall have the right not to be subject to a decision based solely on automated processing, including profiling, which produces legal effects concerning him or her or similarly significantly affects him or her.

3) 유럽연합(EU) 및 유럽경제지역(EEA) 내에서 개인정보 보호와 프라이버시를 강화하기 위해 2018년 5월 25일부터 시행된 데이터 보호 규정

2. 정보주체에 대한 고지 의무 확대

- 개정안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3자 제공, 목적 외 이용·제공과 관련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다른 적법 근거에 따라 처리하거나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때에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에게 수집·이용·제공 등의 목적, 항목 및 보유 기간 등을 알리도록 함(안 제15조, 제17조, 제18조 및 제20조).

현행	개정안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①·② (생략) <u><신설></u>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①·② (현행과 같음) ③ <u>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라 수집한 정보에 연락처 등 정보주체에게 알릴 수 있는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 1.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 2.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의 법적 근거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③ (생략)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①·② (생략) <u><신설></u>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①·② (현행과 같음) ③ <u>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제2호에</u>

현행	개정안
④ (생략)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① ~ ③ (생략) <u><신설></u> ④·⑤ (생략) 제20조(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등 통지) ①	<u>따라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처리자가 수집한 정보에 연락처 등 정보주체에게 알릴 수 있는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 <u>1.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u> <u>2. 개인정보의 제공의 법적 근거</u> ④ (현행과 같음)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u>개인정보처리자가 제2항제2호부터 제10호까지에 따라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처리자가 수집한 정보에 연락처 등 정보주체에게 알릴 수 있는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 <u>1. 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u> <u>2.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의 법적 근거</u> ⑤·⑥ (현행 제4항 및 제5항과 같음) 제20조(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등 통지) ①

현행	개정안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때에는 <u>정보주체의 요구가 있으면 즉시</u>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단서 신설> 1. ~ 3.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종류·규모, 종업원 수 및 매출액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처리하는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처리자가 수집한 정보에 연락처 등 정보주체에게 알릴 수 있는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 본문에 따라 알리는 경우 정보주체에게 알리는 시기·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과 제2항 본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법에 따른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명백	----- ----- -----<u>즉시</u>----- ----- -----<u>다만,</u> <u>개인정보처리자가 수집한 정보에 연락처 등 정보주체에게 알릴 수 있는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 1. ~ 3. (현행과 같음) <삭제> ③ <u>제1항</u>----- ----- ----- ----- -----. ④ <u>제1항은</u>----- ----- ----- -----.

현행	개정안
히 우선하는 경우에 한한다. 1. · 2. (생략)	-----. 1. · 2. (현행과 같음)

□ 현행법은 정보주체의 동의 외에도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제3자 제공, 목적 외 이용·제공할 수 있는 처리 근거⁴⁾를 두고 있음.

○ 이 중 정보주체의 동의를 근거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는 경우에는 동의를 받을 때에 정보주체에게 수집·이용·제공 등의 목적, 항목 및 보유 기간 등을 고지하도록 하고 있음(법 제15조제2항, 제17조제2항, 제18조제3항).

○ 반면에, 동의 외의 다른 법적 근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는 경우에는 어떤 법적 근거와 목적으로 개인정보가 처리되는지에 대해 정보주체에 고지할 의무가 없고,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처리하는 때에도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어야만 개인정보 수집 출처 및 목적을 고지하도록 하고, 대형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해서만 주기적⁵⁾으로 고지하도록 하는 등(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 정보주체에 대한 고지 의무가 제한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정보주체의 알 권리가 제한되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4) 법률 규정, 공공기관의 소관 업무 수행, 명백한 생명·신체·재산의 이익 등

5)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5조의2제2항)

□ 이에 개정안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동의 외 법적 근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는 경우에도 수집·이용·제공 등의 목적, 항목 및 보유 기간 등을 정보주체에게 알리도록 할 뿐 아니라, 제3자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때에는 정보주체 요구가 없더라도 수집 출처 및 목적을 알리도록 함으로써 개인정보 처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측면에서 정보주체에게 본인의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사항을 충분하게 제공해야 하는 당위성과 필요성은 인정되나, 정보주체에 대한 고지 의무를 강화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제도가 작동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보다 세부적인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 먼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등의 사유나 이용자 실익을 고려하지 않고 예외 없이 이에 관한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리도록 하는 것은 공공의 이익을 저해하거나, 오히려 정보주체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도 있음을 고려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제공 여부 등을 인지할 수 있는 경우, 급박한 생명·신체·재산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해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 등에는 고지의 필요성이 적거나 불가능할 수 있어, 사유별로 사전 또는 사후 고지 의무의 부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임.

- 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정보주체에게 필요 이상으로

지나치게 많은 정보가 제공되어 결과적으로 필요한 내용의 확인이 어려워져 오히려 실질적인 알 권리를 제약할 수 있는 측면도 있다고 보고 있음.

○ 그 외에, 개정안은 고지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는데, 제도적 완결성을 위해 고지를 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적인 사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공 내용을 알리는 시점 및 방법, 고지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의 제재조치 등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개정안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자 하는 개정 취지에는 공감하나, 각 사항별 특수성 및 이용자 실익을 고려하여 각 조문별로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개정안에 따른 고지사항은 현행법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법정 기재사항6)에 포함되어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하고 있는 점도 고려되어야 한다는 입장임.

6)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처리 목적, 처리·보유 기간, 제3자 제공, 개인정보 항목 등 포함하도록 규정

3. 정보주체 열람권 보장 범위 확대

- 개정안은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열람 요구할 수 있는 대상에 자신의 개인정보 외에 그 개인정보의 ‘처리(프로파일링 포함)’도 포함 되도록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35조 개정).

현행	개정안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자신의 <u>개인정보에</u> 대한 열람을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① ----- ----- -- <u>개인정보 및 그 처리(프로파일링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정보에</u>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보주체가 자신의 <u>개인정보에</u> 대한 열람을 공공기관에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공공기관에 직접 열람을 요구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위원회를 통하여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② ----- ----- <u>개인정보 및 그 처리 정보</u> ----- ----- ----- ----- -----.
③ ~ ⑤ (생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 현행법 제35조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정보주체가 열람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음. 이는 정보주체가 자신의 정보가 무분별하게 수집·이용 및 제공되는 것을 감시하고 제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핵심적인 요소임.

- 개인정보 자체에 대한 열람뿐만 아니라 개인정보가 어떤 방식으로 처리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으나, 현행법이 정보주체의 열람권 행사 범위를 ‘자신의 개인정보’로 규정하고 있어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정보도 열람이 가능한지 모호한 상황임.
- 이에 개정안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의 대상에 개인정보 ‘처리정보’를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
- 개인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실질적인 알 권리 및 자기정보결정권 보장 측면에서 열람권의 보장 범위를 확대하려는 개정안은 타당한 측면이 있으나, 개인정보처리자의 권익 침해 가능성, 과도한 열람 요구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의 현실적인 업무수행 부담 등도 고려하여 열람권 보장 범위를 논의할 필요가 있음.
-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처리’는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⁷⁾로, 개정안에 따른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처리 전 과정이 열람의 대상이 될 수 있어 사업자의 중요한 영업비밀 등에 해당하는 처리에 대해서도 열람이 가능하게 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처리자는 수집·저장·

7)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정의) 2. “처리”란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제공 등 처리 전체에 대한 정보를 기록·보관하여야 하는 부담도 지게 된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⁸⁾⁹⁾.

- 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¹⁰⁾에서 열람권의 대상으로 ‘개인정보 항목 및 내용, 수집·이용의 목적, 보유 및 이용 기간, 제3자 제공 현황, 처리 동의 내용’을 명시하고 있는데, 알권리 측면에서 정보주체에게 추가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는 정보를 이에 추가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임.

□ 개정안에 대하여 보호위원회는 열람권 보장 범위는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정보주체의 실질적인 알 권리 보장 필요성 뿐만 아니라, 과도한 열람 요구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의 현실적인 업무수행 부담을 고려하여 규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외에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모든 행위까지 열람권 행사 가능한 범위에 포함할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수집·저장·제공 등 처리 전체에 대한 정보를 기록·보관하여야 함.

8)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의견

9) 그 외,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은 【참고자료】 참조

10)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개인정보의 열람절차 등) ① 정보주체는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열람하려는 사항을 개인정보처리자가 마련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17. 10. 17.>

1. 개인정보의 항목 및 내용
2.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의 목적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4.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현황
5.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한 사실 및 내용

【참고자료】 관계부처 및 지자체 의견수렴 결과

- (경찰청) 행정효율성을 크게 저해하고 동의 외 법적 근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를 일률적으로 정보주체에 고지하도록 할 경우 막대한 기술적·재정적 부담이 초래되어 신중검토 의견

※ ①개정안에 따라 개인정보 제공시 고지할 경우 ▲각종 신분증 발급 ▲ 공항자동출입국 ▲범죄수사 등에 활용되는 개인정보 제공 고지를 위해 문자·등기 등 발송에 연간 약 399억원 비용 소요가 예상되며, ②고지업무에 필요한 개인정보(연락처 및 주소) 별도 관리·현행화, 고지업무 수행을 위한 별도 시스템 구축 등 추가적인 개인정보 처리 및 행정부담이 수반될 우려

- 또한, 수사 중에 수집한 개인정보를 피의자에게 알리도록 하는 경우 수사 기관의 신속한 대응이 제한되고, 범죄 수사의 비밀성과 공공안전 확보가 저해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정보주체 고지의 예외 요건을 규정하는 등의 추가적인 검토 필요

- (대구광역시교육청) ▲급박한 생명·신체·재산의 이익, ▲공공의 안전·안녕을 위해 긴급히 필요 등을 근거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는 경우는 재난·재해사고 발생시 골든타임 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고지의 무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

- (대구대학교)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은 법 제18조에 의해 이미 엄격히 제한되고 있고 개별 고지의무의 일률적·전면적 도입은 과잉·중복규제라는 입장이며, 고지내역 대규모 발송 및 회신내용 처리로 인한 과도한 행정소요와 예산부담이 초래될 우려

문 의 처

02)6788-5104